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16.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7. 10. 16.
 다. 상정일자 : 2007. 10. 22.(제1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운영팀장 이춘호)

가. 제안사유

- 도로개설, APT신축 등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최소단위인 행정반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구분	전 행		조정안		증 감		비고
	이통	반	이통	반	이통	반	
계	101	427	101	416	-	△11	
백운면	22	77	22	76	-	△1	
송학면	17	89	17	88	-	△1	
중앙의람명동	27	122	27	121	-	△1	
화산동	35	139	35	131	-	△8	

3. 검토의견

- 화산동의 법정동인 강제동에 강제택지개발지구지정에 따른 공사시행으로 대단위 주택이 철거되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최소단위인 행정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 2007. 4. 24일 행정구역 정비대상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 각 읍·면·동에 2007. 4. 26 ~ 5. 10까지 정비대상지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읍면 5세대이하, 동 10세대 이하가 시전체에 48개반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그 중 담당부서 검토결과 반 통폐합 대상 11개반에 대하여 2007. 8. 2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주민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통반 조정에 11개반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백운면에서 1개반, 송학면에서 1개반, 중앙의림명동에서 1개반, 화산동에서 8개반을 폐합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조⑥항 “제⑤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이·통을 4개반 내지 6개반으로 하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11개반이 넘지 않도록 하고 반은 20 내지 30호로 하여 50호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으로
- 금번 조례안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2007. 9. 20~10. 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 금번 통반조정 후 백운면은 22리 76반, 송학면은 17리 88반, 중앙의림명동은 27리 121반, 화산동은 35통 131반이 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등 행정적·법률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되는 금번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